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등을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 적용하고, 지방 소비세를 활용한 재정분권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며,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방식을 신고납부에서 보통징수로 전환하여 납세자의 무신고가산세 부담을 해소하고,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방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과세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한편, 적격간주합병의 경우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 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올해 일몰 예정인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납세의무자 등 과세체계 마련(안 제7조제17항, 제13조의3제5호, 제107조제2항제5호, 제111조의2제2항, 제119조의2제1항 및 제3항)
- 나. 재개발 등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과세표준 특례규정과 연계하여 현행 과세근거를 명확화하는 등 보완(안 제7조제4항·제8항·제16항, 제9조제3항, 제10조의5제3항제3호)
- 다.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등을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 적용(안 제9

조제7항, 제13조제5항, 제20조제1항)

라. 적격간주합병의 경우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 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15조제1항)

마. 신탁에 따른 재산권의 등기·등록에 대해 등록면허세 비과세 신설(안 제26조제2항)

바. 지방소비세를 활용한 재정분권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일몰기한 3년 연장(안 법§71③ 부칙)

사.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방식을 원칙적 보통징수, 예외적 신고납부 방식으로 규정(안 제83조)

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도 분리과세 대상과 같이 타당성 평가대상으로 확대(안 제106조의2)

자.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면적 등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미신고 시 패널티를 부여(안 제120조)

차. 상속·공매 등 특례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납세의무성립일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로 개정하여 적용 기준일 명확화(안 제125조제2항, 제3항)

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함(안 제145조제2항)

타. 담배분 지방교육세 일몰을 반영하여 담배분 지방교육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정비하고,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주거복지세의 목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규정(안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안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제160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9. 9. ~ 9.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자(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 결과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체비지, 보류지, 임대 주택용 토지 등(이하 “체비지 등”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법 제7조제4항에

다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개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계획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준용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5.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건축물과 부대시설·복리시설을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⑰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 또는 같은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 등에 따른 수익권을 취득한 수익자(이하 이 장 및 제9장에서 “수익자”라고 한다)는 그 신탁된 부동산등을 취득(수익자가 위탁자 또는 직전 수익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익권의 종류, 신탁된 부동산등의 취득 범위와 적용기준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을 “제7조제16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둔”을 “둔 피상속인이

나”로 한다.

제10조의5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7조제16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등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제4호가목 중 “「항공안전법」 제7조”를 “「항공안전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5항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을 각각 “외국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있는”으로 한다.

제13조의3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7조제17항에 따라 수익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신탁된 주택은 수익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 중 “같은 항”을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4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둔”을 “둔 피상속인이나”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자동차등록령」 제5조”로 한다.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재산권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경우

제34조제3항 중 “특별시·광역시”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로, “광역시의”를 “통합특별시의 인구 50만 미만 시는 그 밖의 시로 보고, 통합특별시·광역시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의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제2항에 따른다.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66조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를 각각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8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하여야 할 사업소분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8월 16일부터 8월 31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을 징수하려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분을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사업소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제5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20을 더한 세율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20을 더한 세율
제103조의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 주택 중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천분의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천분의 15)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03조의3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10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제103조의3제1항제2호 중 “10”을 “20”으로 한다.

제103조의3제2항 전단 중 “경우 해당”을 “경우 또는 각 연결사업연도에서 「법인세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같은 법 제57조의2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06조의2의 제목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을 “(별도합산 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평가대상 토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타당성 평가의 평가대상,”을 “평가대상 토지의 선정, 별도합산 및”으로, “분리과세 확대·추가”를 “평가대상토지의 확대·추가”로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별도합산과 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평가대상토지”라 한다)를 축소·정비 등을 하려는 경우 또는 평가대상토지를 확대·추가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의 목적,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다른 지원제도와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대상토지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제107조제2항제5호 전단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이 호에서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이하”로, ““위탁자”라 한다]”를 ““위탁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후

단 중 “위탁자가”를 “위탁자등이”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과 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이 호에서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

다. 제7조제17항에 따라 수익자가 신탁된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자

제110조제1항제1호 중 “90”을 “100”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 중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도(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를 “읍·면 지역 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경우”를 “경우(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과세의 형평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정책 등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

지 아니한 경우

제111조의2제2항 중 “위탁자”를 “위탁자등”으로 한다.

제118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7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6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7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가 제공하는 담보가 「지방세기본법」 제65조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이하 이 조에서 “납세보증보험증권”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자가”를 “위탁자등이”로, “위탁자의 다른”을 “위탁자등의 다른”으로, “위탁자의 재산세”를 “위탁자등의 재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자가”를 “위탁자등이”로 한다.

제120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용도 및 면적

등 현황이 변경되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

8. 제10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용도 및 면적 등 현황이 변경되어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

제1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2(신고의무 불이행 시의 과세표준 가산) 법인이 제120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제110조에 따라 산정한 과세표준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신고할 내용이 토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는 사항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과세기준일”을 각각 “납기가 있는 달의 1일”로 한다.

제131조제1항 본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시장·군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

시장·광역시장”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45조제2항 중 “비과세되는”을 “비과세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150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51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51조제3항 중 “도농복합형태”를 “특별자치시 및 도농 복합형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되, 통합특별시의 인구 50만 미만 시 및 통합특별시·광역시의 군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3항에 따른다.

제152조를 제158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52조) 제1항 전단 중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를 “지방주거복지세의 납세의무자”로,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을 “담배소비세를”로, “지방교육세를”을 “지방주거복지세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개인분·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거나 제60조제6항”을 “제60조제6항”으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납입한다”를 “지방주거복지세를 함께 부과·징수·납입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

까지 중 “지방교육세”를 각각 “지방주거복지세”로 하고, 제15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개인분·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징수·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장(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 제159조 및 제160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장 지방주거복지세

제155조(목적) 지방주거복지세는 지역 주민의 주거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제156조(납세의무자)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주거복지세를 납세할 의무를 진다.

제15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주거복지세는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를 그 세액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주거여건 개선 등을 위한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주거복지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59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제158조제1항에 따라 지방주거복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58조제1항에 따라 지방주거복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7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제15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60조(환급) 지방주거복지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담배소비세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6년이 되는 날”을 “2029년”으로 한다.

법률 제1854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3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7항 및 제13조의3제5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제2호, 제13조제3호·제4호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합병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사업용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

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3조의3제10항 단서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의3제10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택을 2026년 5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제103조의5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제103조의7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3제10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5(제103조3제10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천분의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1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토지 및 건축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지방주거복지세 신설에 따른 적용례) 제150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856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854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85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8546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및 지방주거복지세”로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853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8543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④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지방주거복지세

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중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및 지방주거복지세”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방세법」 제157조에 따른 지방주거복지세의 세율
제255조제1항 중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한다.

⑦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한다.

⑧ 국고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1343호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호나목 중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한다.

법률 제21343호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 중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③ (생략)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 ----- ----- ----- --. <후단 삭제>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	<삭제>

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⑨ ~ ⑮ (생략)

⑯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⑨ ~ ⑮ (현행과 같음)

⑯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자(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 결과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체비지, 보류지, 임대 주택용 토지 등(이하 “체비지등”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개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

<신 설>

서, 해당 법령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계획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준용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5.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건축물과 부대시설·복리시설을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⑰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 또는 같은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 등에 따른 수익권을 취득한 수익자(이하 이 장 및 제9장에서 “수익자”라고 한다)는 그 신탁된 부동산등을 취득(수익자가 위탁자 또는 직전 수익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익권의 종류, 신탁된 부동산등의 취득 범위와 적용기준 등 필

제9조(비과세) ①·② (생략)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 3. (생략)

④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비과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7조제16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

--.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현행과 같음)

2. -----

아니한 상태에서 폐차함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

제10조의5(무상취득·유상승계취득·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② (생략)

③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의 산정 및 적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2. (생략)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 및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경우

4. (생략)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 둔 피상속인이나 -----

--

제10조의5(무상취득·유상승계취득·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제7조제16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등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4. (현행과 같음)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

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
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 3. (생략)

4. 항공기

가. 「항공안전법」 제7조 단
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

나. (생략)

5. ~ 7. (생략)

② (생략)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
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
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

-----.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항공안전법」 제7조제1
항 -----
-

나. (현행과 같음)

5.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등록된 골프장업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사실상 사용하는 그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삭 제

2. (생 략)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2. (현행과 같음)

3. -----

-----.

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생략)

-----외국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있는 -----

4. -----

-----.

--외국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있는 -----

5.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략)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 ~ 4. (생략)

<신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

1. ~ 4. (현행과 같음)

5. 제7조제17항에 따라 수익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신탁된 주택은 수익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

-----.

0분의 300을 적용한다.

1. · 2. (생략)

3.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7. (생략)

② (생략)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
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
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

_____.

1. · 2. (현행과 같음)

3. _____

별첨 제44호제5호

제 2 차 의 국 가 법 정 조 조 건

0 1 2 3 4 5 6 7 8 9 10

4.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

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 ①·②
(생략)

③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의 등록사무(신규등록, 변경등록 및 이전등록을 말한다)를 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격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비과세) ①·② (생략)

<신 설>

-----.

제26조(비과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재산권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경우

제34조(서울) ①·②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특별시·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되, 광역시의 군지역은 군으로 본다. <단서 신설>

④·⑤ (생략)

제57조(개업·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① (생략)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66조(납세의무자) 지방소비세는 제65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서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
---- 통합특별시의 인구 50만 미만 시는 그 밖의 시로 보고, 통합특별시·광역시의 ----. 다만, 통합특별시의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제2항에 따른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57조(개업·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

-----.

1. ~ 3. (현행과 같음)

제66조(납세의무자) -----

-----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
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
한다.

제71조(납입)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또는 납입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50에 해당하
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제71조(납입) ① -----

---- 특별시장 · 통합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
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1. -----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
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2.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60에 해당하
는 부분은 법률 제12118호 지
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
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
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
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
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3.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100에 해당하
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
에 따라 납입한다.

가. (생략)

나. 가목에 따라 시 · 도 전환
사업을 보전함으로써 감소
하는 「지방재정법」 제29

----- 특별시장 ·
통합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
별자치시장 · 도지사 -----
-----.

2. -----

----- 특별
시 · 통합특별시 · 광역시 · 특
별자치시 · 도 -----
-----.

3. -----

-----.

가. (현행과 같음)

나. -----

조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
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
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
다.

4.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43에 해당하

----- 특별시 · 통
합특별시 · 광역시 · 특별
자치시 · 도 -----

다. -----

----- 특별시장 .
통합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4. _____

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
에 따라 납입한다.

가. (생략)

나. 가목에 따라 보전하는 시·도 전환사업의 총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항제1호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_____.

가. (현행과 같음)

[illegible]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
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의
100분의 60은 지역별 소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
하여 납입하고, 나머지 100
분의 40은 지역별 소비지
출·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④ (생략)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생략)

자치시·도 -----
-----.

다. -----

- 특별시장·통합특별시
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 -----

-----.

④ (현행과 같음)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하여
야 할 사업소분의 세액을 결정
하여 해당 연도 8월 16일부터 8
월 31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을 징수하려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분을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사업소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삭 제>

<삭 제>

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삭제

2. 삭제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 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 3. (생략)

4. ~ 7. 삭제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제5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103조의3(세율)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제5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u>과세표준</u>	<u>세율</u>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400만원 초과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5천만원 이하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5천만원 초과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8천800만원 이하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8천800만원 초과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1억5천만원 이하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1억5천만원 초과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u>과세표준</u>	<u>세율</u>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400만원 초과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5천만원 이하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5천만원 초과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8천800만원 이하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8천800만원 초과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1억5천만원 이하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1억5천만원 초과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 ~ 14. (생략)
 ② ~ ⑨ (생략)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포함한다)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20을 더한 세율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20을 더한 세율

10. ~ 14.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⑩ -----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2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천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2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천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1. ~ 4. (생략)

<신 설>

----- . 다만, 해당 주택
중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2027
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
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92
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천분
의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
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
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천분의 15)을 더한 세율을 적
용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⑪ 제10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
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에는 제10항 본문 및 단서에 따
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
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특례 등)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써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103조의49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때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생략)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
로 한다.

[illegible]

1. (현행과 같음)

2. 비사업용 토지(「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비사업용토지를 말한다)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천분의 10 (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3. (생략)

② ~ ⑥ (생략)

제103조의34(과세표준)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3조의19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차감액의 계산 방법, 이월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

----- 20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34(과세표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경우 또는 각 연결사업연도에서 「법인세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같은 법 제57조의2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 법인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제106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를 축소·정비 등을 하려는 경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를 확대·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의 목적,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다른 지원제도와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과세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확대·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 제5항---. ---.

제106조의2(별도합산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평가대상토지”라 한다)를 축소·정비 등을 하려는 경우 또는 평가대상토지를 확대·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의 목적,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다른 지원제도와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대상토지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
----- 평가대상토지-----

-----.

③ ----- 평가대상토지의

평가대상, 분리과세 적용의 필요성 등 평가기준, 분리과세 확대·추가 요청방법 등 평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 4. (생략)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이 호에서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선정, 별도합산 및 -----

----- 평가대상토지

의 확대·추가-----

-----.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이

하 -----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
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
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
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
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신 설>

6. ~ 8. (생 략)

“위탁자등”이라 한다). --- 위
탁자등이-----
-----.

가.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주택
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
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이 호에서 “지역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
합등

다. 제7조제17항에 따라 수익
자가 신탁된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에는 해당 수익자

6. ~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생 략)

②·③ (생 략)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생 략)

2. 건축물

가. (생 략)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10조(과세표준) ① -----

--.

1. -----
----- 100
0---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1조(세율) ① -----

-----.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읍·면 지역 외의 -----

· 특별자치도(읍·면지역
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
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
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
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
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
준의 1천분의 5

다. (생략)

3. ~ 5. (생략)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
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
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
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신설>

<신설>

다.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경우(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과세의 형평
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신 설>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 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 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③·④ (생 략)

제118조의2(납부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재산세액(해당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함께 부과하는 지방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 재산세”라 한다)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정책 등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위
탁자등-----.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2(납부유예) ① -----

-----.

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
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
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
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
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중
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
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
정한다)

4. · 5. (생략)

② ~ ⑤ (생략)

<신설>

---.

1. · 2. (현행과 같음)

3. -----

--

가. -----
--- 8천만원 -----

나. -----

----- 7천만원 -----

----- 8천만원 -----

4.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
무자가 제공하는 담보가 「지방

<신 설>

⑥ (생 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의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세·납부지연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

세기본법」 제65조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이하 이 조에서 “납세보증보험증권”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⑨ ----- 제8항-----

-----.

제119조의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 위탁자등이 -----

----- 위탁

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채납
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
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
(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
탁자가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
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으로
써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 2. (생략)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고지가 있는
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
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
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
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2항에 따
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
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다.

④ ~ ⑦ (생략)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자등의 다른

-- 위탁자등의 재산세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위탁자등이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20조(신고의무) ①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신설>

<신설>

②·③ (생략)

<신설>

-----.

1. ~ 6. (현행과 같음)

7.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용도 및 면적 등 현황이 변경되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

8. 제10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용도 및 면적 등 현황이 변경되어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0조의2(신고의무 불이행 시의 과세표준 가산) 법인이 제12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제110조에 따라 산정한 과세표준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u>신고할 내용이 토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는 사항인 경우에는 제외한다.</u>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생략)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현행과 같음)
② <u>과세기준일</u>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2. (생략) ③ <u>과세기준일</u>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u>납기가 있는 달의 1일</u> ----- ----- ----- ----- -----. 1. 2. (현행과 같음) ③ <u>납기가 있는 달의 1일</u> ----- ----- ----- ----- -----.
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u>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u>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	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 ----- ----- ----- ----- <u>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u> ----- -----

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領置)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와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 . ----- 특별자치
시 · 특별자치도(「지방자치
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특
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이 절
에서 같다)-----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
지사(「지방자치법」 제3조제2
항 단서에 따른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
서 같다) · 시장 · 군수 -----
--.

② -----

----- 특별시장 · 통합특별
시장 · 광역시장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5조(비과세) ① (생략)	제145조(비과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u>비과세되는</u>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 <u>비과세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 -----.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0조(납세의무자)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u>	<u><삭 제></u>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u>	<u><삭 제></u>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u>	③ <u>특별자치시 및 도농 복합형태</u> ----- ----- -----

해당 시의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신 설>

④ (생 략)

<신 설>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되, 통합특별시의 인구 50만 미만 시 및 통합특별시·광역시의 군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3항에 따른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개인분·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징수·납입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3장 지방주거복지세

제155조(목적) 지방주거복지세는
지역 주민의 주거여건 개선 등
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
하여 부과한다.

제156조(납세의무자) 담배소비세
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주거복지
세를 납세할 의무를 진다.

제15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
방주거복지세는 이 법 및 지방
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
99를 그 세액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주거여건 개선 등을 위
한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개인분·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거나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징수·납입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

방주거복지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58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지방주거복지세의 납세의무자----- 담배소비세를 -----

----- 지방주거복지세를 ---

-----.

----- 지방주거복지세-----

-----.

② 제60조제6항 -----

----- 지방주거

세를 함께 부과·징수·납입한다.

③ 제62조의2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납입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부과·징수·납입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⑤ 지방교육세의 특별징수, 납입 및 가산세 면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징수·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복지세를 함께 부과·징수·납입한다.

③ -----

----- 지방주거복지세-----
-----.

④ ----- 지방주거복지세-----

-----.

⑤ 지방주거복지세-----

-----.

⑥ 지방주거복지세-----

-----.

제159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제158조제1항에 따라 지방주거복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

	<u>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u> <u>② 제158조제1항에 따라 지방주거복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7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제15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u>
<u><신 설></u>	<u>제160조(환급) 지방주거복지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담배소비세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u>
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u>2026년 12월 31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	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 ----- ----- <u>2029년 12월 31일까지</u> -----.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

정법률 부칙 제2조(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의 유효기간) 제111조 의 2, 제112조 및 제113조의 개 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부터 <u>6년이 되는 날까지</u>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법률 제18544호 지방세법 일부개 정법률 부칙 제2조 (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제71조제3항제4호가 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u>2026년 12월 31일까</u> <u>지</u> 효력을 가진다.	정법률 부칙 제2조(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의 유효기간) ----- ----- ----- -----<u>2029년</u>----- -----. 법률 제18544호 지방세법 일부개 정법률 부칙 제2조 (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 ----- ----- <u>2029년 12월 31일</u> 까지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05 - 3833